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광해방지의무자 대상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특례 신설〉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16219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부
2. 발의연월일 : 2026. 1. 22.
3. 회부연월일 : 2026. 1.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에 관한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광해방지의무자에게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의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시, 광해방지의무자로 하여금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서 정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의 통지기간에 관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① ~ ⑥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u>⑦</u> (생략)	제24조(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광해방지의무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u> <u>⑧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의 통지기간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u> <u>⑨ 제7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u> <u>⑩ (현행 제7항과 같음)</u>

현행법 제24조¹⁾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 및 자연환경의 원

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해방지의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고(제1항), 부담금의 산정 기준(제2항), 부과 통지(제3항), 납부기한(제4항), 납부 방식 및 절차(제5항), 부담금 감소를 위한 산업통상부장관의 노력의 의무(제6항)에 관한 사항을 차례로 규정하고 있음.

이어서 같은 조 제7항은 부담금의 산정기준·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제정된 「광산 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²⁾는 부담금의 납부통지

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4조(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 및 자연환경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해방지의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석탄산업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광산별로 산정한다.

1. 전년도 광물의 생산실적
2. 광해의 요인·발생정도 및 범위
3. 광산의 가행연수 및 정도
4. 연도별 광해방지사설의 설치계획
5. 휴광·폐광 후 광해의 진행 가능성 및 그 종료 예정기간
6. 광해방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총액
7. 전년도까지 적립된 부담금의 적립금 총액
8. 광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에 필요한 비용총액(손해배상금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9.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중부담하고 있는 광해방지비용의 감면
10. 그 밖에 광해방지에 필요한 비용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부담금을 매년 1월 15일까지 광해방지의무자에게 통지(전자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의 승인통지와 함께 하여야 한다.

④ 광해방지의무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받은 부담금을 납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부담금 산정기준·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부담금 산정기준 등) ① 법 제24조에 따른 부담금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통지를 받은 광해방지의무자는 그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

를 받은 광해방지의무자로 하여금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해당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담금 부과처분을 비롯한 처분 일반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행정기본법」 제36조³⁾를 살펴보면,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고,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법 시행령이 광해방지의무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기본법」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시일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는 광해부담금의 경우 특정 업종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

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부담금의 산정·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⑧ < 생략 >

금 제도로써 업종 대다수가 법무 및 회계분야의 전문인력 상시 배치가 어려운 중소·영세 업체에 해당하여 이의신청 검토에 상당한 기한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음.

개정안은 현행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의 통지 및 처리기한에 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시일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특례의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광해방지 부담금 이의신청에 대한 충분한 신청기한을 보장하여 광해방지의무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법으로서 이와 같은 기본법과 다른 특례를 법률에 신설할 때에는 특례 신설의 취지 및 내용이 법률에 명확히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다수 입법례⁴⁾가 특례의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본

4) <비교 입법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1조(이의신청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문에 신청 및 통지기간을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내용만으로도 「행정기본법」과 달리 이의신청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는 사항이 명확히 예측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 시행령이 광해방지의무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기한을 「행정기본법」에 따른 신청기한 30일보다 긴 60일로 설정하는 것은 신청인의 권익을 보다 충실히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되나,

반대로 행정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및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따른 신청기한 14일보다 긴 20일로 설정하는 것은 신청인의 권리구제의 적시성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률에 그 근거를 구

③ 삭제 <2024. 1. 23.>

④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5조(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420조제1항·제3항, 제421조제1항·제4항, 제42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에 한한다)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또는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관광진흥법」

제30조의2(납부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가산금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입법 방향으로 보임.

이를 고려할 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이의신청 관련 특례의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안 본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68